



신라 태종 묘호 논쟁의 발생과 원인

A Study of Dispute of TaeJong(太宗) Myoho(廟號) and the Causes

저자 (Authors)	안주홍 An, Ju-hong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 (52), 2021.8, 335-368 (34 pages) SILLASAHAKPO , (52), 2021.8, 335-368 (34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04637
APA Style	안주홍 (2021). 신라 태종 묘호 논쟁의 발생과 원인. 신라사학보, (52), 335-36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8 09:2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태종 묘호 논쟁의 발생과 원인

안 주 홍*

- | | |
|-------------------------|----------------|
| I. 머리말 | IV. 논쟁의 주체와 원인 |
| II. 681년설과 재론설 비판 | V. 맺음말 |
| III. 692년설의 재검토와 허구설 비판 | |

【국문초록】

이 글은 신문왕대에 벌어진 태종 묘호 논쟁의 시점, 주체, 원인을 밝힌 글이다.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묘호 논쟁은 692년(신문왕 12)에 벌어졌다. 690년에 측천은 무주혁명을 일으키고 주 태묘인 무씨 7묘를 건립하였다. 그에 따라 당 태묘는 3묘의 향덕묘로 격하되었다. 이에 측천은 안으로는 당 태묘의 격하에 관한 당 종실과 관료집단의 불만을 해소하고, 밖으로는 주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묘호 논쟁을 제기하였다. '중종의 구척'이라는 방식으로 제기하였는데, 이씨 종묘의 문제이므로 이씨인 중종의 이름을 빌린 것이다. 신라 중대 왕실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측천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나는 일통삼한을 왕조의 정당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측천이 대신라의교에서 온 건적인 입장이라서,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라는 태종호를 고수함으로써 혜공왕대와 애장왕대의 종묘 개편에서도 일통삼한 의식을 유지, 환기할 수 있었다.

한편 태종 묘호 논쟁은 신라 내부에서 전승되면서, 『삼국유사』의 형태로 확장, 변형되었다. 다음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당 고종이 김유신을 33천인으로 인정한 점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당 태종의 현신으로 위징과 이순풍을 꼽은 점이다. 위징은 706년에 당 태종의 배향공신이 되었는데, 바로 전해에 중종이 복위하여 당 태묘를 복

* 경북대학교 강사

주요 논저 : 안주홍, 2019.6, 「신라 혜공왕대의 종묘제 개편과 그 함의」 『역사와 경계』 111 : 2020.6, 「신라 애장왕대의 종묘개편과 천자 지향」 『영남학』 73.

원하였다. 이순풍은 당 태종의 자손이 측천에게 전멸당할 것을 막은 일화로 유명한데, 이 일화의 원전은 9세기의 것이다. 위징과 이순풍은 모두 '무주혁명'으로 인한 당 황실의 시련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역으로 묘호 논쟁이 무주혁명과 관련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신문왕, 태종, 묘호, 측천, 일통삼한, 위징, 이순풍, 김암, 향덕묘, 무씨칠묘, 무주혁명

I. 머리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문왕대(681~692)에 당이 태종의 호를 고칠 것을 요구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논쟁을 제기한 시점, 주체,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였는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연구자에 따라 『삼국유사』의 기록을 존중하여 신문왕 즉위 초에 고종 혹은 책립사가 제기한 것으로 보거나, 『삼국사기』의 기록을 존중하여 신문왕 12년(692)에 중종 혹은 측천무후가 제기한 것으로 본다. 또는 두 기록을 모두 존중하여 논쟁이 두 차례 벌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최근에는 실제 벌어진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조작된 이야기라는 견해까지 나왔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사실이라면 논쟁을 일으킨 시점, 주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점이 중요한데, 시점에 따라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논쟁과 관련된 기록은 국내자료에만 존재하여 당측의 상황을 알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논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한 사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왜'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왜 이 시점에 논쟁을 제기하였는가'라는 논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먼저 묘호 논쟁에 대한 기왕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겠다. 이어서 논쟁의 시점으로 신문왕 즉위 초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들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삼국사기』 원전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신문왕의 책립사가 묘호 논쟁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비판하겠다. III장에서는 692년에 논쟁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비판하여, 논쟁의 시점이 692년임을 밝히겠다.

다. 아울러 허구설의 주장대로 『삼국유사』의 내용을 논쟁의 원전으로 볼 수 있는 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묘호 논쟁의 사실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IV장에서는 묘호 논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이며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아울러 묘호 논쟁이 신라 사회에 가지는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이 신라의 종묘제와 신문왕대의 대당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681년설과 재론설 비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문왕대에 당이 김춘추의 태종호를 고칠 것을 요구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내용이 번다하지만 계속 인용될 것이라, 사료 [가-1, 2]로 제시한다. 편의상 내용을 ① 당의 문제 제기 ② 신라의 답변 ③ 당 황제의 처분으로 구분하였다.

[가-1] ① 당 太宗이 사신을 파견하여 口勅으로 말하였다. ‘나의 太宗 文皇帝는 神功聖德하여 천고에 빼어나신 분이다. 그런 까닭으로 돌아가신 날에 태종이라는 廟號를 올렸다. 너희 나라 先王인 金春秋와 호가 같은데, 매우 참월하니 급히 그 호칭을 고치라.’

② 이에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의논하여 대답하였다. ‘小國의 선왕인 김춘추의 諡號가 우연히 聖祖의 묘호와 서로 같아서 칙을 내려 고치라 하니 신이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왕인 춘추는 자못 賢德하였고, 생전에 良臣 金庾信을 얻어 같은 마음으로 정사에 힘써 一統三韓하였으니 그 功業이 적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애모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 춘추의 호를 올렸는데, 성조와 서로 같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敕勅을 들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사신은 궁궐 마당에서 復命하실 때 이를 잘 아뢰어 주시오.’

③ 뒤에 다시 별도의 칙이 없었다.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神文王 12년)¹⁾

[가-2] ① 신문왕 때에 당 高宗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말하였다. ‘짐의 聖考는 賢臣 魏徵

1) “唐中宗 遣使口勅曰 我太宗文皇帝 神功聖德 超出千古 故上僊之日 廟號太宗 汝國先王金春秋 與之同號 尤爲僭越 須急改稱 王與羣臣同議對曰 小國先王春秋諡號 偶與聖祖廟號相犯 勅令改之 臣敢不惟命是從 然念先王春秋 頗有賢德 況生前得良臣金庾信 同心爲政 一統三韓 其爲功業 不爲不多 捐館之際 一國國民 不勝哀慕 追尊之號 不覺與聖祖相犯 今聞敕勅 不勝恐懼 伏望使臣復命闕庭 以此上聞 後更無別勅.”

과 李淳風 등을 얻어 마음을 합하고 덕을 같이하여 一統天下하였으므로 太宗皇帝라 하였다. 너희 신라는 바다 밖 小國인데 太宗의 호를 사용하여 천자의 이름을 참칭하니 그 뜻이 충성스럽지 않다. 속히 그 호칭을 고치라.’

② 신라왕이 表를 올려 답하였다. ‘신라는 비록 소국이나 聖臣 김유신을 얻어 一統三國하였으므로 태종으로 봉하였습니다.’

③ 황제는 表를 보고 이내 태자(儲貳)시절에 하늘에서 ‘33천의 한 사람이 신라에 내려가 유신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책에 기록한 것을 생각해 냈다. 이에 꺼내서 그것을 확인하니 두려울 뿐이었다. 다시 사신을 보내어 태종의 호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였다.(『三國遺事』 권1 紀異1 太宗春秋公)

[가-1]에는 당 중종(재위 683~684, 705~710)이 692년(신문왕 12)에 구칙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되어 있다. [가-2]에는 당 고종(재위 649~683)이 신문왕 시절에 사신을 파견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고종은 683년(흥도 원년, 신문왕 3) 12월에 사망하므로,³⁾ [가-2]의 시점은 681년(신문왕 원년)에서 683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가-1, 2]의 시점, 주체, 방식, 결과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가-1, 2]의 시점, 주체, 방식, 결과 비교

구분	시점	주체	방식		결과
			당	신라	
[가-1]	692년	중종	遣使口勅	上聞	更無別勅
[가-2]	681~683년	고종	遣使	上表	更遣使許

<표 1>에 보이듯이 논쟁의 결과는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당이 태종호를 목인 혹은 허락하였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시점과 주체는 명확히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록의 차이로 인해 연구자에 따라 [가-2]를 존중하여 논쟁이 681년(신문왕 원년)에 벌어졌다고 보기도 하고(이하 681년설), [가-1]를

2) “神文王時 唐高宗 遣使新羅曰 朕之聖考 得賢臣魏徵李淳風等 協心同德 一統天下 故爲太宗皇帝 汝新羅海外小國 有太宗之号 以借天子之名 義在不忠 速改其号 新羅王上表曰 新羅雖小國 得聖臣金庾信 一統三國 故封爲太宗 帝見表乃思 儲貳時 有天唱空云 三十三天之一人 降於新羅爲庾信 紀在於書 出檢視之 驚懼不已 更遣使許 無改太宗之号.”

3) “是夕 帝崩於眞觀殿 時年五十六 ... 群臣上諡曰天皇大帝 廟號高宗.”(『舊唐書』 권5, 本紀 5, 高宗下 興도 원년 12월)

존중하여 692년(신문왕 12년)에 벌어진다고 보기도 한다(이하 692년설). 또는 모두 존중하여 681년과 692년에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보거나(이하 재론설), 모두 부정하여 후대에 신라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기도 한다(이하 허구설). 이 장에서는 기왕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논쟁의 시점으로 681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681설과 재론설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먼저 681년설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 고종은 683년 12월에 사망하였고, 당시 황태자였던 중종이 즉위하였다. 그러나 황태후인 측천무후와 갈등을 빚고 이듬해(684, 문명 원년, 신문왕 4) 2월에 폐위되어 廬陵王이 되었다. 중종의 뒤를 이어 예종이 즉위하였으나 측천무후가 臨朝稱制하였다. 측천은 690년(천수 원년, 신문왕 10) 9월에 국호를 周로 고치고 황제가 되었고, 황제인 예종을 皇嗣로 삼았다. 여릉왕(중종)이 다시 황태자가 된 것은 698년(성력 원년, 효소왕 7) 9월이고, 705년(신룡 원년, 성덕왕 4) 정월에 복위하였다.⁴⁾

이에 681년설은 692년에 중종이 황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1]의 시점을 부정하였다. 이어서 『삼국사기』 신문왕 즉위조에 기록된 책립 기사를 주목하여,⁵⁾ 당 고종이 파견한 사신을 신문왕의 책립사로 추정하였다. 그에 따라 논쟁이 발생한 시점을 681년으로 비정한 것이다.⁶⁾ 다만 연구자에 따라 논쟁의 주체를 고종이 아닌 책립사로 보기도 하는데, 그 근거로 [가-1]의 口勅을 꼽는다. 그는 묘호 개정과 같은 중대한 외교 문제를 구칙으로 제기할 리가 없다고 보았다.⁷⁾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당 制勅에 관한 연구성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은

4) “弘道元年十二月丁巳 大帝崩 皇太子顯即位 … (문명 원년)二月戊午 廢皇帝爲廬陵王 … 己未 立豫王輪爲皇帝 令居於別殿 大赦天下 改元文明 皇太后仍臨朝稱制 … (천수 원년) 九月九日壬午 革唐命 改國號爲周 … 乙酉 加尊號曰聖神皇帝 降皇帝爲皇嗣 … (성력 원년 9월)丙子 廬陵王哲爲皇太子 … (신룡 원년 정월)甲辰 皇太子監國 總統萬機 大赦天下 是日 上傳皇帝位於皇太子.”(『구당서』 권6, 본기6, 측천후황). 한편 684년은 중종이 재위한 2월까지의 사성 원년, 예종이 즉위한 2월부터 9월까지의 문명 원년인데, 편의상 문명 원년으로 표기하였다.

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즉위조.

6) 황운룡, 1982, 「신라태종묘호의 분규시말」 『동국사학』 17, 17~18쪽; 권덕영, 2005, 「8, 9세기 ‘군자국’에 온 당나라 사절」 『신라문화』 25, 97쪽; 채미하, 2008, 「오묘제와 중대왕권」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163~165쪽. 황운룡은 본문에서 명확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록으로 붙인 <표 2>(28쪽)에 책립사 파견을 681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7) 황운룡, 같은 논문, 18쪽. 윤경진(2013.8a, 「신라 태종(무열왕) 시호 논변에 대한 자료적 검토」 『역사와 실학』 51, 15~16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신이 구칙을 사칭할 수도 없

아니었다.

이처럼 681년설은 [가-1]의 ‘중종의 구칙’을 주목하였지만, 이 구절은 해당 기록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692년설과 재론설이다. 692년설은 ‘구칙이란 사적이며 간편한 황제의 의지표명’이라는 연구성과를 인용하여, 그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는 측천무후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중종의 구칙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해석하였다.⁸⁾ 또는 측천이 제기하였으나, 『삼국사기』의 찬자인 김부식이 필법에 따라 중종의 구칙으로 개서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⁹⁾ 재론설의 입장에서 692년에 여릉왕인 중종이 측천의 허락 아래 미해결된 논쟁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정식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없어서 구칙으로 제기하였다는 견해도 있다.¹⁰⁾ 이처럼 [가-1]의 ‘중종의 구칙’은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681년설의 주장대로 [가-2]의 사신이 신문왕의 책립사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최근 허구설은 681년에 논쟁이 존재했다면, 묘호 논쟁 기사가 함께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¹¹⁾ 그의 지적은 『삼국사기』 원전에 관한 연구성과를 생각하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중국 관련 기사는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과 같은 중국 자료를 상당수 이용하여 작성하였다고 일찍부터 지적되었다.¹²⁾ 그러면서도 중국 자료와 국내자료가 모두 있으면 국내자료를 더 중시하였다고 한다.¹³⁾ 그에 따라 사신 파견의 시점을 중국 자료와 달리 기록하거나, 중국 자료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첨부하기도 하였다.¹⁴⁾

다며 묘호 논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 8) 金子修一, 2001.9, 「중국의 입장에서 본 삼국통일」 『한국고대사연구』 23, 10~11쪽.
- 9) 김영하, 2010.9, 「일통삼한의 실상과 의식」 『한국고대사연구』 59 : 2012, 『한국 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쪽.
- 10) 박남수, 2016.12a, 「신라 문무왕대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8, 290~291쪽.
- 11) 윤경진, 앞의 논문, 2013.8a, 15쪽
- 12) 정구복, 1995, 「삼국사기의 원전 자료」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쪽 ; 권덕영, 1995, 「『삼국사기』 신라본기 견당사 기사의 몇 가지 문제」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4~95쪽 ; 전덕재, 2015.8, 「『삼국사기』 신라본기 중·하대 기록의 원전과 완성」 『대구사학』 120 :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143쪽.
- 13) 정구복, 같은 논문, 18쪽.

허구설의 지적대로 681년에 묘호 논쟁이 벌어졌다면, 해당 일화가 책립 사실과 함께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즉위조라 묘호 논쟁을 삽입하기 어려웠다면 애장왕 6년(805)의 책립 기사와 같이¹⁵⁾ 是年으로 정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681년에 책립 사실만 기록된 것은 묘호 논쟁과 관련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2]와 『삼국사기』의 신문왕 책립 기록을 근거로 한 681년설은 따르기 어렵다.

게다가 681년은 논쟁을 제기할만한 당의 사정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¹⁶⁾ 이 시기 당의 대외관계는 張文瓘의 간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¹⁷⁾ 678년(의봉 3년)에 당 고종은 신라 토벌을 시도하였는데, 장문관의 반대로 그만두었다. 이때 장문관은 ‘토벌을 토벌’해야 하고, ‘신라가 순종하지는 않지만, 변경을 침입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였다. 즉 신라와 관계가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토벌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당은 토벌, 돌궐과의 갈등이 큰 문제였기에¹⁸⁾ 신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 당은 680년(영릉 원년)에 태자 李賢을 폐위시키고 영왕 李哲을 황태자로 삼는 등¹⁹⁾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 시기의 당은 신라에 논쟁을 일으킬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2]에 논쟁의 주체로 당 고종을 언급한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삼국유사』는 때로는 사건의 시점이 모호하게 기록되기도 한다. 선덕왕(재위 632~647)과 모란꽃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삼국사기』에는 전왕인 진평왕대(579~632)의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당 태종(재위 626~

14) 전덕재, 앞의 책, 154~159쪽, 170~171쪽.

15)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6년. 해당 기사는 정월과 8월 기사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애장왕의 책립 사실은 『책부원구』(권976, 외신부21, 포이3)에 따르면 2월이다.

16) 황운룡(앞의 논문, 17~18쪽)은 당시 측천이 권력을 장악해가던 때였으므로, 당 황실의 위엄을 고조시키는 묘호 논쟁을 일으킬 리 없다고 보았다.

17) “上將發兵討新羅 侍中張文瓘 臥疾在家 自輿入見 諫曰 今吐蕃爲寇 方發兵西討 新羅雖云不順 未嘗犯邊 若又東征 臣恐公私不堪其弊 上乃止.”(『자치통감』 권202, 당기18, 의봉 3년 9월).

18) 이 시기 토벌과 돌궐에 관한 내용은 다음 두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영교, 2006, 『나당 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90~292쪽; 권은주, 2010, 『7세기 후반 북방민족의 반당활동과 발해건국』 『백산학보』 86, 158~162쪽.

19) “甲子 廢太子賢爲庶人 … 乙丑 立左衛大將軍雍州牧英王哲爲皇太子.”(『자치통감』 권202, 당기18, 영릉 원년 8월).

649)이 사신을 보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²⁰⁾ 즉 누가 받았는지를 생략한 것이다. 당 태종은 진평왕과 선덕왕의 치세에 걸쳐 재위하였기에, 『삼국유사』의 기록은 자칫 선덕왕대의 일로 이해하기 쉽다. 이처럼 『삼국유사』에 명확한 시점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이야기’의 전개상 반드시 기술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당 태종의 의도를 간파한 현명한 선덕왕’이지, ‘언제 누가 그림과 꽃을 받았는가’가 아니다.

[가-2]의 당 고종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III장에서 자세히 살펴겠지만, [가-2]는 허구설의 지적과 같이 신문왕대가 아닌 그 후대에 신라 내부에서 정립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의 핵심은 ‘신문왕 때에 당 황제가 태종의 묘호를 고치라고 하였으나, 일통삼한의 공이 있어 거절하였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상 논쟁의 시점은 ‘신문왕 때(神文王時)’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문왕대에는 고종, 중종, 예종, 측천이 황제로 재위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신문왕 때의 당 황제’라는 의미로 [가-2]에 ‘당 고종’이 기록되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재론설에 대해 살펴보자. 재론설은 681년에 고종이 논쟁을 제기하였으나 미해결되었고, 692년에 중종이 재론한 것으로 본다.²¹⁾ 그러나 681년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으므로, 미해결된 논쟁이 692년에 다시 제기되었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또 재론설은 681년의 논쟁이 ‘미해결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하나는 [가-2]의 기록과 상치된다는 점이다. [가-2]에는 고종이 태종호를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다. 즉 논쟁이 종결된 것이다. 681년설이 재론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교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제가 직접 제기할 만큼 중요한 논쟁이 십여 년간 미해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왕 6년(686)의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문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어 禮記와 文章을 요청하였다. 이에 측천은 관련 부서에 명

20) 『삼국유사』 권1, 기이1, 선덕왕 지기삼사.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즉위조. 해당 내용은 배근홍(2007, 「『삼국유사』에 보이는 나당관계 내용의 새로운 검토」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62~264쪽)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1) 김수태, 1999a, 「나당관계의 변화와 김인문」 『백산학보』 52, 673~674쪽 ; 박남수, 앞의 논문, 2016.12a, 287~288쪽.

하여 吉凶要禮를 빼끼고 아울러 文館詞林 가운데 규범이 될만한 글을 택하여 50권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²²⁾ 당이 취사 선택하여 사여한 예제는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 즉 천자와 제후의 관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예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³⁾ 그런데 이때 신라는 원측의 방한도 요청하였는데, 당은 이를 거절하였다.²⁴⁾ 이처럼 당은 신라의 요구를 선별하여 대응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이 대 신라외교에서 무엇을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바로 예제를 통한 당 중심의 국제 질서 수립이다. 재론설의 해석대로 묘호 논쟁이 미해결 상태였다면, 당의 입장에서는 이때야말로 다시 논쟁을 언급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재론설은 따르기 어렵다.

한편 최근 당과 신라를 오가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²⁵⁾ 착안하여 692년은 682년(신문왕 2)의 오기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는 『구당서』 고종본기의 기록을 근거로 681년(개요 원년) 10월 22일에 신문왕의 책립사가 파견 혹은 파견이 결정되었고, 이들이 약 3개월 후인 682년 1월 20일에 신라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전제로 『삼국사기』 찬자들이 신문왕 2년의 기사를 신문왕 12년으로 잘못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연도를 제외한 다른 내용이 거의 비슷할 때 유용할 것이다. <표 1>에 보이듯이 [가-1, 2]는 논쟁의 주체와 방식이 다르므로 오기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묘호 논쟁이 681년에 벌어졌다는 해석은 따르기 어렵고, 681년에 논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692년에 논쟁이 재론되었다는 재론설도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묘호 논쟁은 [가-1]의 기록과 같이 692년에 벌어진 것일까? 아니면 허구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 III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2)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6년.

23) 濱田耕策, 1982, 「新羅の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東京 學生社: 2002, 『新羅國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69쪽;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187~188쪽.

24) 권덕영, 1997, 『고대한중외교사-견당사연구-』, 일조각, 44쪽.

25) 권덕영, 같은 책, 1997, 43~44쪽.

26) “新羅王金法敏薨 仍以其子政襲位.”(『구당서』 권5, 본기5, 고종하 개요 원년 10월 정해). 김종복, 2016.6a,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진단학보』 126, 4~6쪽.

III. 692년설의 재검토와 허구설 비판

이 장에서는 [가-1]의 기록을 부정하는 허구설의 비판을 재검토하여, 묘호 논쟁이 692년(신문왕 12)에 벌어졌다는 것을 밝히려다. 허구설은 '효소왕의 책립사'와 '묘호 논쟁의 원전'이라는 두 가지를 점에서 [가-1]을 부정했다. 이 두 가지는 기왕의 견해에서는 간과되었기 때문에 논쟁의 실체를 밝히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효소왕의 책립사에 대해 살펴보자. 허구설은 『삼국사기』의 효소왕 즉위조(692)에 기록된 책립 기사를 주목하였다.²⁷⁾ 그는 692년 한 해에 묘호 논쟁을 제기한 사신과 효소왕의 책립사가 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가-1]의 기록을 부정하였다.²⁸⁾ 이후 사신 파견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횡수를 이유로 사료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²⁹⁾ 대단히 예외적인 것으로 수정하였다.³⁰⁾

그러나 이러한 허구설의 비판은 신라본기 8권의 서술방식에서 기인한 오해로 보인다. <표 2>는 신라본기 8권에 기록된 각 왕의 즉위 기록을 중국 자료와 비교한 것이다.

<표 2> 신문왕, 효소왕, 성덕왕의 즉위 기록 비교

	『삼국사기』		중국 자료	
	책립 기사	원년 첫 기사		
① 신문왕	즉위조(681)	원년 8월	681년 10월	『구당서』
② 효소왕	즉위조(692)	원년 8월	693년 2월	『자치통감』
③ 성덕왕	즉위조(702)	원년 9월	703년 윤4월	『자치통감』

<표 2>에 보이듯이 신라본기 8권은 신왕의 책립 사실을 즉위조에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신이 파견된 시점과 괴리가 생겨 주의해야 한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구당서』에 따르면 신문왕의 책립사는 681년 10월에 파견 혹은

27)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즉위조.

28) 윤경진, 앞의 논문, 2013.8a, 15쪽

29) 김영하, 2018.3,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89, 260~261쪽.

30) 윤경진, 2019.3c, 「삼한일통의식은 7세기의 이념인가」 『한국고대사연구』 93, 288쪽. 그는

[가-1]에 의문을 가지게 된 계기로 연이은 사신 파견을 꼽았다.

파견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표 2> ①과 같이 신문왕 즉위조는 원년 8월 기사로 이어져,³¹⁾ 『삼국사기』만 보면 자칫 책립사의 파견 시점을 681년 8월 이전의 일로 오해하기 쉽다.

성덕왕의 책립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성덕왕은 702년(효소왕 11년) 7월에 효소왕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표 2> ③과 같이 성덕왕의 즉위조는 원년 9월 기사로 이어져³²⁾ 책립 사실을 702년 9월 이전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효소왕의 사망과 성덕왕의 책립 사실은 『구당서』와 『책부원구』에는 702년(장안 2)으로, 『자치통감』에는 703년(장안 3)으로 되어 있다.³³⁾ 702년은 효소왕의 죽음에, 703년은 성덕왕의 책봉에 초점을 둔 기록이다. 따라서 성덕왕의 책립사가 파견된 것은 703년(성덕왕 2)으로,³⁴⁾ 즉위조와 차이가 있다.

효소왕의 책립 사실도 실제와 차이가 있다. 692년 7월에 신문왕이 사망하자, 효소왕이 즉위하였다. <표 2> ②에 보이듯이 효소왕의 즉위조는 원년 8월 기사로 이어지므로,³⁵⁾ 효소왕의 책립 사실을 692년 8월 이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왕의 사망과 효소왕의 책립 사실은 『구당서』에는 692년(천수 3)으로, 『자치통감』과 『책부원구』에는 693년(장수 2)으로 되어 있다.³⁶⁾ 성덕왕과 마찬가지로 692년은 신문왕의 사망 시점이고, 693년은 책립사를 파견한 시점이다.³⁷⁾ 효소왕의 책립사는 693년(효소왕 2)에 파견되었으므로, 692년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3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월.

32)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효소왕 11년 가을 7월, 성덕왕 원년 9월.

33) ① “理洪 以長安二年卒 則天爲之舉哀 輟朝二日 遣立其弟興光爲新羅王 仍襲兄將軍都督之號.”(『구당서』 권211, 동이열전, 신라). ② “長安二年 新羅王金理洪卒 則天遣使 立其弟興光爲新羅王 仍襲兄將軍都督之號.”(『책부원구』 권964, 외신부9, 봉책2). ③ “新羅王金理洪卒 遣使立其弟崇基爲王.”(『자치통감』 권207, 당기23, 장안 3년 윤4월 기묘).

34) 권덕영, 앞의 책, 1997, 45쪽 ; 앞의 논문, 2005, 99~100쪽 ; 김종복, 앞의 논문, 2016.6a, 10~11쪽.

3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12년 7월, 효소왕 원년 8월.

36) ① “天授三年 政明卒 則天爲之舉哀 遣使弔祭 册立其子理洪爲新羅王 仍令襲父輔國大將軍 行豹韜衛大將軍雞林州都督.”(『구당서』 권211, 동이열전, 신라). ② “長壽二年 新羅王金政明卒 爲之舉哀 遣使弔祭 册其子理洪 爲新羅王 仍令襲父輔國大將軍行左豹韜衛大將軍雞林州都督.”(『책부원구』 권964, 외신부9, 봉책2). ③ “新羅王政明卒 遣使立其子理洪爲王.”(『자치통감』 권205, 당기21, 장수 2년 2월 병자).

37) 김종복, 앞의 논문, 2016.6a, 7~8쪽.

다음으로 묘호 논쟁의 원전에 대해 살펴보겠다. 허구설은 [가-1, 2]의 차이를 '원전의 인용 혹은 개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는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가-2]가 원전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삼국유사』 태종춘추공조가 '원전을 충실히 전제'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2]가 [가-1]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구성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가-1]은 원전에 의심 가진 『삼국사기』 찬자들이 신문왕대의 일이라는 의미로 신문왕 말년인 즉위 12년에 삽입하고 주체와 방식을 중중의 구칙으로 고쳤다고 주장하였다.³⁸⁾ 즉 [가-2]가 원전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가-1]의 기록을 부정한 것이다. 과연 [가-2]가 원전을 인용한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허구설의 지적대로 『삼국유사』는 전거를 제시한 인용문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으며, 협주의 형태로 찬자의 견해를 기록하여 본문과 혼동될 일이 거의 없다.³⁹⁾ 반면 『삼국사기』는 대체로 전거를 밝히지 않으며, 찬자가 일부 표현을 고치기도 하였다.⁴⁰⁾ 그러나 『삼국사기』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며,⁴¹⁾ 『삼국유사』도 찬자가 원문을 축약하거나 고치기도 하였다.⁴²⁾ 이러한 선행연구를 볼 때 [가-1, 2]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일방이 고쳤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내용의 구체성에 대해 살펴보자. 허구설은 [가-1, 2]의 내용을 ① 당의 문체 제기 ② 신라의 답변 ③ 당 황제의 처분으로 구분하고, ②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항목에서 [가-2]가 구체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①과 ③은 [가-1, 2]가 전혀 다른 형태이므로, 양자의 구체성을 따질 수 없다. 더 큰 문체는 구체성이 원전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이다. 예를 들면 눌지왕의 동생들을 구출해낸 박(김)제상에 경우 『삼국유사』의 내용이 구체적이다. 그러나 그를 郡太守로 기록한 『삼국유사』보다 州干으로 기록한 『삼국사기』의 내용이 당시의 상황에 부합한다고 평가받는다.⁴³⁾ 따라서 구체성을 근거로 [가-2]가 원전을 인용

38) 윤경진, 앞의 논문, 2013.8a, 18~26쪽, 31~33쪽.

39) 김두진, 2003, 「삼국유사의 사료적 성격」 『역주삼국유사』 5, 이회문화사, 71~74쪽.

40) 정구복, 앞의 책, 1995, 3쪽, 19~20쪽.

41) 신형식, 1981, 『삼국사기 연구』, 일조각, 359~360쪽.

42) 맥브라이드 리차드, 2007, 「『삼국유사』의 신빙성 연구-중국 및 한국 문헌자료의 사례-」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174~190쪽.

43) 하일식, 2007, 「『삼국유사』의 빈민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5쪽.

했다고 보는 그의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구성의 합리성도 마찬가지이다. 허구설은 [가-1, 2]의 ① 당의 문제 제기과 ② 신라의 답변을 군주, 功臣(칭호, 대상자), 功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가-1, 2] 구성 비교

구분	주체	군주	공신		공업
			칭호	대상자	
㉠[가-1]	① 당	태종문황제	-	-	-
	② 신라	선왕춘추	良臣	김유신	一統三韓
㉡[가-2]	① 당	태종황제	賢臣	위징, 이순풍 등	一統天下
	② 신라	태종	聖臣	김유신	一統三國

허구설은 <표 3> ㉡와 같이 ①과 ②가 군주-공신-공업이라는 동일한 구성으로 대비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가-2]가 원전에 가깝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야기는 전승 과정에서 내용이 축소될 수도 살이 덧붙여질 수도 있다. 즉 허구설과 반대로 신라의 공신과 공업만 언급하는 이야기([가-1])가 전승 과정에서 신라와 당이 대구를 이루는 이야기([가-2])로 확장, 정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2]가 후대에 신라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허구설의 지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2]가 원전의 변형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그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자.

허구설은 당 태종의 공업인 ‘一統天下’와 공신인 ‘위징과 이순풍’을 분석하여 논쟁이 후대에 신라 내부에서 형성된 이야기라고 보았다. 당 태종의 공업과 공신에 대한 분석은 기왕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것이라 의미하는 바가 크다. 허구설은 『신당서』 위징전을 인용하여 당 태종이 자신의 공업을 貞觀 이전의 ‘천하 평정’과 정관 이후의 ‘체제 정비’로 구분하고, 전자는 房玄齡의 공으로 후자는 위징의 공으로 평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전제로 위징이 태종에 짝하는 존재로 부각된 것은 현종대(712~756)에 편찬된 『貞觀政要』의 영향이며, 태종의 공업을 ‘일통천하’로 기술한 것은 태종무열왕의 공업인 ‘一統三國’에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⁴ 즉 [가-2]가 8세기 이후 신라 내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2]는 묘호 논쟁의 원전을 인용한 것이므로, 묘호 논쟁은 사실이

아니라 후대의 이야기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가 인용한 『신당서』 위징전의 내용은 『구당서』 위징전과 『정관정요』 위징편에도 실려있다.⁴⁵⁾ 『정관정요』는 현종대에 吳兢이 지은 책이므로,⁴⁶⁾ 해당 일화의 원전은 『정관정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관정요』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내용은 사료 [나]와 같다.

[나] 12년(638)에 태종이 황손의 탄생으로 公卿을 불러 잔치를 하였는데, 황제가 매우 즐거워하며 시종하는 신하에게 말하였다. ‘정관 이전에 나를 따라 천하를 평정하며(平定天下)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은 현령의 공을 따를 자가 없다. 정관 이후에 진심으로 충성스러운 직언을 올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이롭게 하여(安國利人), 내가 오늘날의 공업을 이루는데 천하의 칭찬을 받는 자는 오직 위징뿐이다. 옛날의 이름 있는 신하라도 어찌 이와 같겠는가.’ 이에 친히 佩刀를 풀어 두 사람에게 주었다.⁴⁷⁾

먼저 당 태종의 공업에 대해 살펴보자. [나]를 보면 8세기 당에서는 태종의 공업을 ‘平定天下’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종무열왕의 공업인 ‘일통삼한’에 대비하여 당 태종의 공업을 ‘일통천하’로 설정했다는 허구설의 지적은 적절하다.

[가-2]가 신라 내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김유신을 33천의 한 사람으로 표현한 고종의 답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유신을 33천인으로 보는 인식은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도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해룡이 되어서 삼한을 지키는 문무왕과 33천의 아들인 김유신이 守城의 보물로 만파식적을 내렸다고 한다.⁴⁸⁾ 김유신을 33천인으로 보는 인식은 신라에서 형성된 이야기이므로, 고종의 33천 발언은 신라에서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당 태종의 공신인 위징에 대해 살펴보자. [나]는 다음 두 가지 점을

44) 윤경진, 앞의 논문, 2013.8a, 26~28쪽.

45) 『신당서』 권97, 열전22, 위징, 『구당서』 권71, 열전21, 위징. 『구당서』와 『정관정요』와 문장은 거의 같다.

46) 오궁 찬, 임동석 역주, 2009, 『정관정요』 1, 동서문화사, 18~19쪽.

47) “十二年 太宗以誕皇孫 詔宴公卿 帝極歡 謂侍臣曰 貞觀以前 從我平定天下 周旋艱險 玄齡之功 無所與讓 貞觀之後 盡心於我 獻納忠讜 安國利人 成我今日功業 爲天下所稱者 惟魏徵而已 古之名臣 何以加也 於是親解佩刀 以賜二人.”(『貞觀政要』 권2, 論任賢3, 魏徵)

48) 『삼국유사』 권2, 기이2, 만파식적.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당 태종이 방현령과 위징에게 패도를 하사하였다는 결말이다. 이는 두 사람의 공을 동등하게 중시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나]가 위징편이라는 점이다. 위징의 업적을 기술하면서 방현령과 위징이 대비되는 일화를 배치한 것인데, 이는 당 태종의 가장 대표적인 공신이 방현령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정관정요』의 논임현에는 방현령, 杜如晦, 위징, 王珪, 李靖, 虞世南, 李勣, 馬周 순으로 총 8명이 기록되어 있다.⁴⁹⁾ 기록의 순서가 공헌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위징이 방현령을 비롯한 8명의 임현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관정요』의 영향으로 위징이 부각되었다는 허구설의 해석은 따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2]에 방현령이 누락되고 위징만 언급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묘호 논쟁은 종묘에 대한 문제이므로, 당 태종의 배향공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 [다]는 태종의 배향공신에 대한 기록이다.

[다] 태종묘는 7인이다. 贈太尉梁文昭公 房玄齡, 贈司徒申文獻公 高士廉, 贈尙書左僕射蔣忠公 屈突通은 정관 23년(649) 9월 24일에 칙을 내렸다. 영휘 4년(653) 2월에 이르러 방현령은 아들인 遺愛의 반란으로 배향이 정지되었다. 贈太尉鄭文貞公 위징은 신룡 2년(706) 윤2월 15일에 칙을 내렸다. 太尉趙國公 長孫無忌, 贈司徒衛景武公 李靖, 司空萊成公 杜如晦는 천보 6년(747) 정월 12일에 칙을 내렸다.⁵⁰⁾

[나]에 공신으로 언급된 방현령과 위징은 당 태종의 배향공신이지만, [다]에서 보이듯이 배향의 시점과 지속 여부는 달랐다. 방현령은 649년(정관 23)에 사망하였고 태종릉(昭陵)에 陪葬되었다. 고종은 즉위 이후 그를 태종묘에 配享하였다.⁵¹⁾ 그러나 [다]에서 보이듯이 653년(영휘 4)에 그의 아들인 遺愛의 모반으로 배향이 중지되었다. 위징은 642년(정관 16)에 사망하였고 태종릉에 배장되었으나,⁵²⁾ [다]에 보이듯이 배향은 706년(신룡 2)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당시 어떤 이

49) 『정관정요』 권2, 논임현3, 房玄齡 杜如晦 魏徵 王珪 李靖 虞世南 李勣 馬周.

50) “太宗廟七人 贈太尉梁文昭公房玄齡 贈司徒申文獻公高士廉 贈尙書左僕射蔣忠公屈突通 並貞觀二十三年九月二十四日勅 至永徽四年二月 房玄齡 以子遺愛反 停配享 贈太尉鄭文貞公 魏徵 神龍二年閏二月十五日勅 太尉趙國公長孫無忌 贈司徒衛景武公李靖 司空萊成公杜如晦 並天寶六載正月十二日勅.”(『唐會要』 권18, 緣廟裁制下)

51) “尋薨 年七十 廢朝三日 冊贈太尉並州都督 諡曰文昭 給東園秘器 陪葬昭陵 … 高宗嗣位 詔配享太宗廟庭.”(『구당서』 권66, 열전16, 방현령).

유로 위징이 배향된 것인지는 기록이 없어 알기 어렵다. 다만 705년(신룡 원년)에 중종이 복위한 후 당 태묘를 복원하였는데, 시기적으로 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정리하면 [가-2]에 방현령이 언급되지 않고 위징만 언급된 것은 배향 공신의 변동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2]는 706년 이후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공신인 이순풍에 대해 살펴보자. 허구설에 따르면 이순풍은 역법을 관장한 관리인데, 그가 태종의 공신으로 언급된 것은 김유신의 후손이자 음양가인 金巖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⁵³⁾ 김암은 779년(혜공왕 15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간 기록이 있으므로,⁵⁴⁾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2]는 8세기 이후의 인식이 반영된 셈이다.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래에서 검토해보자.

이순풍은 天文, 歷算, 陰陽의 학문에 밝은 자로 太史令을 역임하였고 『法象志』, 『麟德曆』을 편찬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상지』는 역대의 渾儀가 가진 득실을 파악하여 지은 것이며, 『인덕력』은 劉焯의 『황국력』을 고쳐 만든 것이다.⁵⁵⁾ 그가 역임한 태사령은 太史局의 監으로, 업무는 천문을 관찰하고 歷數를 계산하는 것이다.⁵⁶⁾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그의 주된 학문은 천문과 역산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암은 김유신의 嫡孫인 允中の 庶孫이다. 그는 중국에서 陰陽家法을 배워 『遁甲立成之法』을 지었다. 귀국 후 司天大博士가 되었고,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백성들에게 六陣兵法를 가르쳤다고 한다.⁵⁷⁾ 그가 역임한 사천대박사가 司

52) “太宗夜夢徵若平生 及旦而奏徵薨 時年六十四 太宗親臨慟哭 廢朝五日 贈司空相州都督 諡曰文貞 給羽葆鼓吹 班劍四十人 賻絹布千段 米粟千石 陪葬昭陵.”(『구당서』 권71, 열전 21, 위징)

53) 윤경진, 2013.11b,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한국사학보』 53, 238~241쪽. 그는 김암이 김유신 행록을 편찬한 김장청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윤진석, 2020, 「648년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발원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 - ‘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한일통의식 9세기 성립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탐구』 34, 153~154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54)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부김암.

55) “李淳風 … 尤明天文歷算陰陽之學 … 又論前代渾儀得失之差 著書七卷 名爲法象志以奏之 … 遷太史令 … 淳風又增損劉焯皇極歷 改撰麟德歷奏之 術者稱其精密.”(『구당서』 권 79, 열전29, 이순풍)

56) “司天臺 舊太史局 隸秘書監 … 監一人 從三品 本太史局令 … 太史令掌觀察天文 稽定歷數.”(『구당서』 권43, 지23, 직관2)

57)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부김암.

天博士와 관련 있는 것이라면⁵⁸⁾ 천문을 관장하는 직으로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천문과 관련된 관직을 역임하였고, 이순풍이 음양에도 밝았다고 하니 허구설의 주장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양자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둔갑입성지법』과 육진병법을 통해 알 수 있다. 『구당서』 경적 丙部에는 五行類의 하나로 『遁甲立成法』이 기록되어 있다.⁵⁹⁾ 오행은 점을 쳐서 징후를 예언하는 것이다.⁶⁰⁾ 김암의 『遁甲立成之法』이 이것과 같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제목이 유사하므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암이 배운 음양가법은 오행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암이 가르쳤다는 육진병법은 674년(문무왕 14)에 아찬 薛秀眞이 도입한 것으로, 당의 李靖이 諸葛亮的 八陣法에 의거하여 만든 六花陣法으로 추정되고 있다.⁶¹⁾ 이정은 당 태종에게 병법을 설명하면서 權謀, 形勢, 陰陽, 奇巧의 4개로 구분하였는데,⁶²⁾ 이를 통해 당시 음양이 병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김암이 배운 음양가법은 오행으로 병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허구설의 주장대로 김암을 염두에 두고 당 태종의 공신을 설정하였다면, 오히려 당 태종의 배향공신이자(다), 육화진법으로 유명한 이정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김암으로 인해 이순풍이 언급되었다는 허구설의 주장은 따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2]에 이순풍이 태종의 공신으로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에 보이듯이 이순풍은 당 태종의 배향공신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태종과 관련하여 축천의 등장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648년(정관 22)에 당 태종은 30년 이후에 여자 임금이 등장하여 唐 자손이 거의 죽임을 당한다는 이순풍의 말을 듣고,

58)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정구복 외,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522~523쪽)에 따르면 천문박사는 경덕왕대에 사천박사로 개칭되고 이후에 사천대박사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59) 『遁甲立成法 三卷 ... 右五行一百一十三部 凡四百八十五卷.』(『구당서』 권47, 지27, 경적하)

60) 『丙部爲子 其類一十有四 ... 十三曰五行 以紀卜筮占候.』(『구당서』 권46, 지26, 경적상)

61) 권덕영, 1999, 『『천지서상지』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백산학보』 52, 393~395쪽; 서영교, 앞의 책, 197~200쪽. 다만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698쪽)에 따르면 제갈량의 팔진병법의 오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62) 『太宗曰 司馬法人言穰苴所述 是歟否也 靖曰 ... 今世傳兵家流 又分權謀形勢陰陽技巧四種 皆出司馬法也.』(『李衛公問對』 권상)

의심되는 자를 모두 죽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순풍은 30년 이후이면 노쇠하여 인자해지므로 화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만약 그를 죽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젊은이는 엄혹하므로 폐하의 자손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태종은 그의 말을 따라 죽이기를 그만두었다.⁶³⁾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자 임금의 등장은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이순풍 덕분에 당 태종의 자손이 전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⁶⁴⁾ 『구당서』에는 ‘노쇠하면 자어로 워서 비록 다른 성을 받게 되더라도 폐하의 자손이 혹여나 심하게 상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⁶⁵⁾ 앞서 언급하였듯이 690년에 축천은 황제가 되고 예종을 황사로 삼았다. 이때 황사인 예종에게 武氏 성을 하사하였고, 698년에 여릉왕(중종)을 다시 황태자로 삼았을 때에도 무씨 성을 하사하였다.⁶⁶⁾ 705년에 중종이 복위하자, 무씨의 주는 李氏의 당으로 돌아갔다. 이순풍의 예언은 예종과 중종이 무씨가 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살아남아 복위할 수 있었던 상황과 꼭 맞다. 이순풍이 당 태종의 현신으로 언급된 데에는 이러한 일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해당 설화의 원전은 당 문종과 무종 시기(827~846)의 책인 『談賓錄』이라고 한다.⁶⁷⁾ 따라서 [가-2]에 이순풍이 공신의 하나로 언급된 데에는 9세

63) 『民間又傳秘記云 唐三世之後 女主武王代有天下 上惡之 … 上密問太史令李淳風 秘記所云 信有之乎 對曰 臣仰稽天象 俯察曆數 其人已在陛下宮中 爲親屬 自今不過三十年 當王天下 殺唐子孫殆盡 其兆既成矣 上曰 疑似者盡殺之 何如 對曰 天之所命 人不能違也 王者不死 徒多殺無辜 且自今以往三十年 其人已老 庶幾頗有慈心 爲禍或淺 今借使得而殺之 天或生壯者肆其怨毒 恐陛下子孫 無遺類矣 上乃止.’(『자치통감』 권199, 당기15, 정관 22년 7월 경인) 같은 내용이 『구당서』(권79, 열전29, 이순풍)와 『신당서』(권204, 열전129, 방기 이순풍)에도 전한다.

64) 윤진석(앞의 논문, 154~155쪽)은 해당 설화를 이순풍이 축천의 목숨을 구해준 것으로 해석하고, 축천의 관념 속에서 이순풍이 당 태종의 현신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순풍의 말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여자 임금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존재이므로 그가 축천을 구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65) 『更三十年 又當衰老 老則仁慈 雖受終易姓 其於陛下子孫 或不甚損.’(『구당서』 권79, 열전 29, 이순풍)

66) 『(천수 원년)乙酉 加尊號曰聖神皇帝 降皇帝爲皇嗣 賜姓武氏 皇太子爲皇孫 … (성력 원년 9월)壬申 立廬陵王顯爲 皇太子臘月 … (성력 2년 남월)辛亥 賜皇太子姓武氏.’(『신당서』 권4, 본기4, 축천황후 중종) 성력 2년 남월은 698년 12월이다. 축천은 689년 11월에 周歷을 사용하였는데, 그때 11월을 정월로 12월을 남월로 하대의 정월을 1월로 삼았다. 『改永昌元年十一月爲載初元年正月 十二月爲臘月 改舊正月爲一月.’(『구당서』 권6, 본기6, 축천무후)

기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태종의 공신인 위징과 이순풍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당 태종의 현신으로 묶인 데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무주혁명(690)으로 인한 당 황실의 시련'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징은 당 태묘의 '복원' 이후 배향되었다. IV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측천은 무주혁명 이후 주 태묘를 세웠고, 그에 따라 당 태묘는 享德廟로 격하되었다. 이 향덕묘를 다시 천자 7묘로 복원한 것이 705년의 일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역으로 묘호 논쟁이 측천, 즉 무주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가-1]은 '효소왕의 책립사'나 '논쟁의 원전' 여부로 부정할 수 없다. 반면 [가-2]는 당 태종의 공업과 공신에 관한 서술을 볼 때, 8세기 이후 신라 내부의 인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가-1]의 '사실'이 신라 내부에서 전승되면서, [가-2]의 '이야기'로 확장, 변형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특징은 [가-2]의 ③ 당 황제의 처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가-1]에 전하듯이 별도의 칙을 보내지 않아 사실상 '묶인된 사실'이 신라 내부에서 전승되면서 당 황제가 '사신을 보내 허락'하는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692년에 논쟁을 일으킨 주체와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IV. 논쟁의 주체와 원인

[가-1]에 따르면 692년에 당 중종이 구칙으로 논쟁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황제는 측천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692년설은 논쟁의 주체를 측천으로 고쳐 보았다. 그에 따르면 690년에 측천무후는 無血로 武周혁명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 唐朝 舊臣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측천무후가 당 宗室을 존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묘호 논쟁을 '중종의 구칙'으로 제기하였다고 한다.⁶⁷⁾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정, 즉 논쟁의 원인이 당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692년설은 논쟁의 원인까지 제시하여 다른 견해들과 차

67) 장정혜, 2003.12, 「무측천 설화에 나타난 예언과 징조」 『중국어문학지』 14, 125~127쪽.

68) 金子修一, 앞의 논문, 10~11쪽

별성이 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연구자 자신이 시인하였듯이, [가-2]의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논쟁이 고종대에 벌어졌다 하더라도 축천무후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석을 달았다.⁶⁹⁾ 그러나 고종대라면 논쟁의 원인으로 무주혁명에 대한 불만 해소를 꼽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692년설은 축천이라는 논쟁의 주체는 명시하였지만, 시점과 원인은 모호한 해석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논쟁의 주체와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자. 692년설은 주체를 ‘축천’으로, 방식을 ‘중종의 구칙’으로 보았다. 그런데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다른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하나는 주체는 ‘축천’이지만, ‘중종의 구칙’은 김부식이 필법에 따라 개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⁷⁰⁾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축천을 외교의 주체로 기술한 기록이 존재한다. 앞서 인용한 신문왕 6년(686)과 효소왕 즉위년(692)의 기사이다. 만약 [가-1]이 개서되었다면, 축천을 주체로 기록한 두 기사도 같은 이유로 개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종의 구칙’이 찬자의 개서일 가능성은 적다.⁷¹⁾

다른 하나는 중종이 여릉왕이어서 정식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없어서 구칙으로 제기하였다는 해석이다. 그에 따르면 여릉왕인 중종이 축천무후의 명에 따라 望德寺와 奉聖神忠寺의 낙성을 살피고자 樂鵬龜를 파견하면서, 미해결된 태종 묘효의 개정 문제를 질의하였다고 한다.⁷²⁾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종은 684년(문명 원년, 신문왕 4) 2월에 폐위되어 여릉왕이 되었다. 당시 별소에 유폐되었다가 그해 3월 均州로 옮겨졌고, 685년(수공 원년, 신문왕 5) 3월에 房州로 옮겨졌다. 그가 다시 방주에서 올라와 황태자가 된 것은 698년(성력 원년, 효소왕 7) 9월이었다.⁷³⁾ 692년(신문왕 12)에 중종은 방주에 유폐된 여릉왕에 불과했다. 방주는

69) 金子修一, 앞의 논문, 10쪽 주2.

70) 김영하, 앞의 책, 200쪽.

71) 윤경진(2019.3c, 앞의 논문, 288쪽)도 692년 효소왕 즉위조의 기록을 근거로 개서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72) 박남수, 2016.12a, 앞의 논문, 289-291쪽.

73) “(문명 원년)二月戊午 廢皇帝爲廬陵王 幽於別所 … (3월)丁丑 遷廬陵王哲於均州 … (수공 원년)三月 遷廬陵王哲於房州 … (성력 원년)春三月 召廬陵王哲於房州 … (9월)丙子 廬陵王哲爲皇太子.”(『구당서』 권6, 본기6, 축천황후)

산세가 험하고 풍토병이 도는 땅으로 살아가기 힘든 유배지⁷⁴⁾로 평가되고 있다. 과연 그는 외교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었을까?

방주에서 중중이 곤란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韋后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위후는 중중의 비로 중중이 폐위되자 함께 방주로 갔다. 당시 중중은 매번 사신이 이르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자살하고자 하였는데 황후가 왕을 막으며 말렸고, 여러 해 동안 어려움과 위태로움을 같이하여 정과 사랑이 매우 두터웠다고 한다.⁷⁵⁾ 또 張知謩과 崔敬嗣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705년(신룡 원년)에 복위한 중중은 여릉왕 시절에 州司의 제약이 심하였는데, 이 두 사람이 예로 대우하며 풍성하고 넉넉하게 물품을 대어주었다며 포상하였다.⁷⁶⁾ 이런 기록들을 볼 때 692년에 방주에 유배된 여릉왕(중중)은 생존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외교활동의 주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생각하면 692년에 논쟁을 벌인 주체는 황제인 측천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가 논쟁을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며, ‘중중의 구칙’이라는 형태로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 태묘의 건립과 그에 따른 당 태묘의 격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禮記』 王制편에는 天子에서 庶人까지의 지위에 따른 廟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자는 7묘이고, 제후는 5묘이다. 大夫는 3묘이고 士는 1묘이다. 서인은 묘가 없다.⁷⁷⁾ 이러한 예제에 근거하여 당은 618년(무덕 원년)에 처음 4묘를 세웠고, 635년(정관 9)에 태조와 三昭三穆의 6묘로 구성된 천자 7묘를 세웠다. 고종이 부묘된 684년(문명 원년)에도 7묘였다.⁷⁸⁾

74) “史臣曰 … 孝和皇帝越自負屨 遷於房陵 崎嶇瘴癘之鄉 契闊幽囚之地.”(『구당서』 권7, 본기7, 중종예종)

75) “中宗韋庶人 … 中宗爲太子時 納後爲妃 … 嗣聖元年 立爲皇后 其年 中宗見廢 後隨從房州 時中宗懼不自安 每聞制使至 惶恐欲自殺 後勸王曰 禍福倚伏 何常之有 豈失一死 何遽如是也 累年同艱危 情義甚篤.”(『구당서』 권51, 열전1, 후비상)

76) “初上在房陵 州司制約甚急 刺史河東張知謩 靈昌崔敬嗣 獨待遇以禮 供給豐贍 上德之 擢知謩自貝州刺史爲左衛將軍 賜爵范陽公 敬嗣已卒 求得其子汪 嗜酒 不堪釐職 除五品散官.”(『자치통감』 권208, 당기24, 신룡 원년 9월)

77) “天子七廟 三昭三穆與太祖之廟而七 諸侯五廟 二昭二穆與太祖之廟而五 大夫三廟 一昭一穆與太祖之廟而三 士一廟 庶人祭於寢.”(『예기』 왕제)

78) “唐武德元年 始立四廟 … 貞觀九年 高祖崩 太宗詔有司定議 諫議大夫矍子奢請立七廟 虛太祖之室以待 … 制曰可 於是祔弘農府君及高祖爲六室 … 高宗崩 宣皇帝遷於夾室 而祔高宗 皆爲六室.”(『신당서』 권13, 지3, 예악3) “文明元年 八月 奉高宗神主祔於太廟中 始遷

측천은 690년(천수 원년, 신문왕 10)에 황제가 되자 神都에 무씨 7묘를 건립하고, 周의 文王을 始祖 文皇帝로 자신의 아버지인 武士護를 太祖 孝明高皇帝로 추봉하였다.⁷⁹⁾ 무씨 7묘는 측천이 주의 황제로서 천자 7묘인 태묘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⁰⁾ 무씨 7묘의 건립은 李唐에서 武周로의 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태묘가 건립되었으므로 기왕의 태묘, 즉 당 태묘는 태묘일 수 없었다. 측천은 691년(천수 2) 3월에 당 태묘를 享德廟로 고치고, 고조(李淵) 이하 3묘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⁸¹⁾

廟數에 따르면 향덕묘는 천자 7묘가 아니라 대부 3묘가 된다. 그러나 향덕묘는 태묘와 같이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기에 일반 귀족의 家廟와는 다른 公廟로 볼 수 있다.⁸²⁾ 이점에 주목하여 측천이 당 태묘를 폐지하지 않고 향덕묘로 유지한 것은 신하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있다. 즉 순조로운 정권교체를 위해서 향덕묘를 국가 제사 체제 내에 두어야만 했다는 것이다.⁸³⁾ 이는 역으로 무주혁명은 당 태묘를 철폐할 수 없을 만큼 반대가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점은 무씨 7묘의 건립과정을 살펴보면 더 잘 드러난다. 측천은 母后로 臨朝稱制하던 시기인 684년(광덕 원년)과 688년(수공 4)에 무씨 7묘의 건립을 도모하였는데, 그때마다 천자만이 7묘를 세운다며 좌절되었다. 684년 9월에 무후의 조카이자 예부상서인 武承嗣가 무씨 7묘의 건립을 건의하자, 中書令 裴炎은 사사

宣皇帝神主於夾室.”(『구당서』 권25, 지5, 예의5) 『신당서』에 6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三昭三穆의 6실을 말한다. 당시 태조는 虛位로 두었다.

79) “壬午 改國號周 大赦 改元 賜酺七日 乙酉 加尊號曰聖神皇帝 丙戌 立武氏七廟於神都 追尊周文王曰始祖文皇帝 … 四十代祖平王少子武曰睿祖康皇帝 … 太原靖王曰嚴祖成皇帝 … 趙肅恭王曰肅祖章敬皇帝 … 魏義康王曰烈祖昭安皇帝 … 周安成王曰顯祖文穆皇帝 … 忠孝太皇曰太祖孝明高皇帝.”(『신당서』 권4, 본기4, 측천황후 중종 천수 원년 9월)

80) 이 점은 ‘당 태묘를 향덕묘로 삼고 무씨 7묘를 태묘로 삼았다(改唐太廟爲享德廟 以武氏七廟爲太廟)’는 『신당서』(권4, 본기4, 측천황후 중종 천수원년 10월)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반면 金子修一(2006, 『中國古代皇帝祭祀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329~330쪽)은 688년에 동도(신도)에 세운 이당의 3묘를 태묘로 보고, 이것에 무씨 7묘를 함께 모신 것으로 보았는데, 따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비판은 李永, 2017.8, 「宗廟與政治：武則天時期太廟體制研究」 『學術學術』 49, 154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81) “(천수 2년)改西京太廟爲享德廟 四時唯享高祖已下三室 餘四室令所司閉其門 廢其享祀之禮.”(『구당서』 권25, 지5, 예의5)

82) 周善策, 2010年 第5期, 「國家禮儀與權力結構：試論唐朝前半期陵廟禮之發展」 『歷史研究』, 35쪽. 다만 그는 향덕묘를 諸侯宗廟로 보았는데, 제후는 5묘이므로 따르지 않는다.

83) 李永, 앞의 논문, 155~157쪽.

로이 묘를 건립할 수 없다고(不可私於所親) 반대하였다. 결국 측천은 7묘가 아닌 5묘를 모신 사당을 수도가 아닌 文水에 세웠다.⁸⁴⁾ 이후 측천은 688년에 정월에 京(서경, 장안)에 자신의 祖考를 모신 崇先廟를 세웠다. 이때 司禮博士 周忭希가 崇先의 廟室을 7묘로 늘이고, 皇室의 태묘를 5묘로 줄이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春官侍郎 賈大隱은 天子는 7묘이고 諸侯는 5묘이니, 崇先의 묘실은 제후의 수가 합당하며 國家宗廟는 고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이때에도 측천은 崇先묘를 7실로 늘릴 수 없었다.⁸⁵⁾

두 차례의 시도 속에서 측천은 자신이 모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동시에 당 황실을 비롯한 그를 지지하는 관료집단은 측천이 황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의 위기감은 같은 해에 벌어진 반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684년 9월에 李敬業(徐敬業)은 中宗의 복위를 주장하며(以匡復廬陵爲辭) 반란을 일으켰는데, 현에 격문을 보내어 '오늘날 강역이 누구의 천하인가(請看今日之域中 竟是誰家之天下)'며 반문하였다.⁸⁶⁾ 또 688년 8월에 瑯邪王 李冲은 아버지 李貞을 비롯한 여러 황족과 함께 황제(예종)의 친정(匡復之志)을 기도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神皇(측천)이 이씨의 사직을 무찌로 옮기려 한다(神皇欲傾李家之社稷 移國祚於武氏)'며 병사를 모았다.⁸⁷⁾ 이 두 난은 측천의 임조를 반대하며 일어난 대표적인 반란이다.⁸⁸⁾ 무씨 7묘의 건립 시도는 두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데에

84) “武承嗣請 太后追王其祖 立武氏七廟 太后從之 裴炎諫曰 太后母臨天下 當示至公 不可私於所親 獨不見呂氏之敗乎 … 太后不從 己巳 追尊太后五代祖 … 又作五代祠堂於文水.”(『資治通鑑』 권203, 당기19, 광택 원년 9월) 648년 9월에서 12월까지의 광택 원년이다.

85) “(수공 4년 정월)別立崇先廟以享武氏祖考 則天尋又令所司 議立崇先廟室數 司禮博士 崇文館學士周忭希詣 請立崇先廟爲七室 其皇室太廟 減爲五室 春官侍郎賈大隱奏曰 … 並據禮經正文 天子七廟 諸侯五廟 … 其崇先廟室 合同諸侯之數 國家宗廟 不合輒有移變 臣之愚直 並依正禮 周忭之請 實乖古儀 則天由是且止.”(『구당서』 권25, 자5, 예의5)

86) “遂據揚州 鳩聚民衆 以匡復廬陵爲辭 … 仍移檄諸郡縣曰 … 請看今日之域中 竟是誰家之天下.”(『구당서』 권67, 열전17, 이적 손자 경업)

87) “自則天稱制 貞與韓王元嘉 魯王靈夔 霍王元軌及元嘉子黃國公譔 靈夔子範陽王藹 元軌子江都王緒並貞長子博州刺史瑯邪王冲等 密有匡復之志 … 又僞爲皇帝璽書云 神皇欲傾李家之社稷 移國祚於武氏 遂命長史蕭德琮等召募士卒.”(『구당서』 권76, 열전26, 월왕정 아들 남야왕충) “壬寅 博州刺史瑯邪王冲據博州起兵.”(『구당서』 권6, 본기6, 측천후황 수공 4년 8월)

88) 권은주, 앞의 논문, 162~163쪽.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무주혁명의 상징인 주 태묘의 건립과 그에 따른 당 태묘의 격하에 대해 당 종실과 관료집단이 반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격하된 당 태묘 즉 향덕묘는 3묘이다. 묘수만 보면 5묘를 운용하는 제후국인 신라의 종묘보다 지위가 낮다. 바로 이 점이 묘호 논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1]의 ① 당의 문체 제기를 살펴보자. [가-1]에는 김춘추의 태종호를 두고 '매우 참월하다(尤爲僭越)'고 표현하였다. 이는 당 종실의 향덕묘가 제후국인 신라의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측천이 논쟁을 일으킨 원인은 향덕묘에 대한 불만 해소로 볼 수 있다. 즉 692년설이 지적인 것처럼 측천은 당 종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논쟁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무주혁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측천이 당 종실을 우대하는 모습은 691년의 명당 제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측천은 무씨 조상들과 함께 당의 세 황제도 배향하였다.⁸⁹⁾ 이처럼 측천은 무주혁명에 관한 당 종실과 관료집단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구사하였고, 묘호 논쟁도 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주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측천이 논쟁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종의 구칙에 따르면 신라의 종묘는 향덕묘 보다 아래에 있다. 그리고 향덕묘는 주의 태묘인 무씨 7묘 아래에 존재한다. 정리하면 천자 7묘인 무씨 7묘 아래 이씨의 향덕묘가 있고, 그 아래 제후국인 신라의 종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가-1, 2]의 표현을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1]의 중종은 당 태종을 '우리 태종 문황제'라 부르고, 신라가 '참월하다'고 하였다. 반면 [가-2]의 고종은 당 태종을 '聖考'라 부르고, 신라가 '천자의 이름을 참칭하였다(僭天子之名)'고 하였다. 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2]는 8세기 이후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무주에서 다시 이당이 된 시기의 인식이므로, 태종의 호를 '천자의 이름'이라 칭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가-1]은 당시 천자가 측천이므로 성조나 천자를 언급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는 묘호 논쟁으로 당 태묘가 향덕묘로 격하되고 그 자리에 주 태묘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89) “乙酉 日南至 大享明堂 祀昊天上帝 百神從祀 武氏祖宗配饗 唐三帝亦同配.”(『자치통감』 권204, 당기20, 천수 2년 정월)

그렇다면 축천은 왜 '중종의 구칙'이라는 형태로 논쟁을 제기한 것일까? 바로 향덕묘에 부모된 태종 문황제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주혁명으로 황제는 무찌른 축천이었고, 황사인 예종도 무찌가 되었다. 반면 여릉왕(중종)은 698년에 다시 황태자가 되면서 무찌 성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릉왕은 698년 이전까지 이씨였다고 볼 수 있다. 향덕묘는 이씨의 종묘이므로 논쟁의 주체는 이씨, 즉 여릉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여릉왕은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중종의 구칙'은 실제 중종이 구칙을 행사했다기보다, 축천이 중종 즉 여릉왕의 이름을 빌려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릉왕을 논쟁의 주체로 내세웠기에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외교문서가 아닌 구칙의 형태로 제기하였던 것이고, 이 당 종실을 존중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692년에 축천이 '중종의 구칙'으로 묘호 논쟁을 제기한 원인은 안으로는 당 태묘의 격하에 따른 당 종실과 관료집단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이고, 밖으로는 주 중심의 국제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11]의 ② 신라의 답변에서 보이듯이 신라는 사실상 중종의 구칙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신라가 다른 이민족과 달리 저자세로 대응하였고, 무주정권은 신라를 비교적 취급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았다는 692년설의 주장은⁹⁰⁾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신라는 중종의 구칙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는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태종의 호가 一統三韓의 功業으로 올려졌기 때문이다. 종묘는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정치적 공간이다.⁹¹⁾ 따라서 소위 무열왕계라 불리는 중대 왕실은 자신의 정당성을 일통삼한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신문왕대는 왕조의 정당성으로 표방했던 일통삼한 의식이 정책과 더불어 정립되는 시기였다.⁹²⁾ 신문왕은 고구려의 후신으로 간주 되던 보덕국을 683년(신문왕 3)과 684년(신문왕 4)에 걸쳐 해체하여 진정한 일통삼한을 표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685년(신문왕 5)에 9주를 완성하였는데, 원 신라지역, 옛 백제 지역, 옛 고구려 지역에 각기 3개의 주를 두었다.⁹³⁾ 따라서 9주의

90)金子修一, 앞의 논문, 11~12쪽.

91) 신성곤, 2014, 「종묘 제도의 탄생」 『동아시아문화연구』 57, 42쪽.

92) 노태돈, 1982,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136쪽 ; 김영하, 앞의 책, 197~205쪽 ; 주보돈, 2017c,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126, 31~34쪽.

완성은 일통삼한의 완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9주는 천자가 다스리는 천하 그 자체이므로 신라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⁴⁾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신문왕은 일통삼한을 부정하는 개호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측천이 대신라외교에서 온건한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신라의 대당전쟁은 당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676년(문무왕 16)경에 일단락되지만, 곧 바로 관계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당의 경우 683년에 고종이 사망하자 측천의 집권을 둘러싸고 당 종실과 관료집단의 반발이 이어져 신라를 압박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⁹⁵⁾ 오히려 이러한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측천은 신라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다고 볼 수 있다. 측천의 적극성은 686년(신문왕 6)에 신라가 문장을 요청하자 50권의 책을 ‘만들어’ 보낸 것에서 잘 드러난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684년에는 서경업의 반란이 있었다. 반란을 진압한 이후 측천은 자신이 황제(예종)를 대신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라는 것을 과시해야 했을 것이다. 686년의 환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신라외교에 대한 측천의 입장을 간파한 신라는 ‘중종의 구칙’을 거절해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의 판단은 적중하여 [가-1]에서 보이듯이 측천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논쟁 이후에도 측천은 온건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측천이 효소왕을 새로 보국대장군으로 책립한 것이나, 694년에 사망한 김인문의 유해를 보내준 것에서 잘 드러난다.⁹⁶⁾

93)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3년 겨울 10월, 4년 11월, 5년 봄, 같은 책 권34, 지리 1, 신라강역조.

94) 신라의 천하관은 천자와 천자국을 지향하면서도 당의 제후국임을 인정하여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창겸, 2004.12,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21~227쪽; 김수태, 2014.12b,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64~67쪽; 후보돈, 2015.8a, 「신라의 ‘동경’과 그 의미」 『대구사학』 120, 208~21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95)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73~279쪽; 후보돈, 앞의 논문, 2017c, 29~30쪽.

96) 권덕영, 앞의 논문, 2005, 96~99쪽; 후보돈, 2016b, 「대중 외교와 그 흐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12 신라의 대외관계와 국제교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83쪽. 한편 김종복(2019.5b,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251쪽)은 아버지의 관작을 이었다는 표현에 주목하여 그의 관작이 675년 이후 복구된 문무왕의 관작과 같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문무왕은 보국대장군을 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따르지 않는다.

측천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신라의 이탈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무주혁명은 주변 세력이 주를 공격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거란의 孫萬榮과 돌궐의 默啜을 통해 알 수 있다. 697년(신공 원년)에 손만영은 幽州를 점령하면서 여릉왕의 복위를 주장하는 격문을 조정에 보냈고, 698년(성력 원년)에 목철은 武延秀가 자신의 딸과 혼인하러 오자 무씨가 ‘어찌 천자의 아들이냐(此豈天子之子乎)’며 거부하고, 황사(예종)의 복위를 주장하며 병사를 일으켰다.⁹⁷⁾ 698년에 여릉왕이 다시 황태자가 되는 데에는 이러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측천은 이민족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라에 더욱 온건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702년에 효소왕이 사망하자 측천이 이틀간 조회를 정지한 것⁹⁸⁾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논쟁이 중요한 외교 사안으로 부상하여, 오히려 당 종실의 위상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측천의 임조칭제와 황제 즉위는 끊임없는 반대를 받았고, 그때마다 천자는 이씨라는 의식이 환기되었다. 묘호 논쟁은 ‘천하를 평정(平定天下)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이롭게(安國利人)’ 한 태종(나)에 관한 것이다. [가-1]의 ② 신라의 답변을 보면, 신라는 당 태종을 ‘聖祖’라고 지칭하였다. 논쟁이 격화될수록 성조 태종이 환기되어, 역으로 무주혁명에 대한 반발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측천의 입장에서는 [가-1]에 보이듯이 신라가 자신을 ‘소국’으로 지칭하여 양국의 상하 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즉 측천에게 묘호 논쟁은 반드시 관철해내야 하는 외교 현안이 아니었다. 중국 기록에 해당 논쟁이 남겨지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라에서 묘호 논쟁은 의미가 크다. 태종은 묘호이자 功德에 따라 세워진 祖宗의 호로,⁹⁹⁾ 당 태종과의 대등함을 암시하는 것이었다.¹⁰⁰⁾ 묘호 논쟁의

97) “(신공 원년 3월)契丹乘勝寇幽州 攻陷城邑 剽掠吏民 攸宜遣將擊之 不克 (성력 원년 2월) 孫萬榮之圍幽州也 移檄朝廷曰 何不歸我廬陵王李哲 … 六月甲午 命淮陽王武延秀入突厥 納默啜女爲妃 … 八月戊子 武延秀至黑沙南庭 突厥默啜謂閻知微等曰 我欲以女嫁李氏 安用武氏兒邪 此豈天子之子乎 我突厥世受李氏恩 聞李氏盡滅 唯兩兒在 我今將兵輔立之.”(『자치통감』 권206, 당기22) 손만영이 유주를 점령한 것은 697년의 일인데, 격문의 내용은 698년에 기록되어 있다.

98)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즉위조.

99) 채미하, 앞의 책, 182쪽; 안주홍, 2020.6b, 「신라 애장왕대의 종교개편과 천자 지향」 『영남학』 73, 249~253쪽; 박남수, 2020.8b, 「신라 종교제의 정비와 운영」 『신라사학보』 49,

결과 신라 왕실은 일통삼한 의식에 바탕을 둔 나름의 천하관을 계속 표방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해공왕대(765~780)의 종묘개편에서 잘 드러난다. 해공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큰 공덕을 가진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불훼묘로 삼았다.¹⁰¹⁾ 두 대왕의 공덕은 일통삼한의 다른 표현으로, 두 대왕은 천자만이 갖는 2祧로서 불훼묘가 되었다.¹⁰²⁾ 태종에게 국한되었던 일통삼한 의식은 해공왕대의 개편으로 문무왕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두 대왕으로 상징되는 일통삼한 의식은 애장왕대의 개편에서도 유지되었다. 애장왕은 801년(애장왕 2)에 두 대왕의 묘를 따로 세우고, 직계 4친을 부모하였다.¹⁰³⁾ 두 대왕을 따로 세운 것은 회철이 아니라 불훼묘를 묘수에서 제외한 것으로, 두 대왕은 여전히 공덕에 따라 세운 2조였다.¹⁰⁴⁾ 애장왕은 두 대왕의 묘를 유지하여 일통삼한 신라의 계승자임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일통삼한 의식은 9세기까지 종묘를 통해 환기,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1]의 사실이 [가-2]의 형태로 확장, 변형될 수 있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제까지 태종 묘호 논쟁이 발생한 시점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태종 묘호 논쟁은 692년에 측천이 ‘중종의 구칙’이라는 형태로 제기하였다. 측천은 안으로는 당 태묘의 격하에 따른 당 종실과 관료집단의 불만을 해소하고, 밖으로는 주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하고자 논쟁을 일으켰다. 묘호 논쟁은 7세기 후반의 신라와 주(당)의 외교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일통삼한 의식과 그에 근거한 독자적인 천하관을 이해하는데도 요긴하다. 남은 과제는 다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태종의 봉호 시점으로, 신라가 종묘를 언제

20~22쪽.

100) 주보돈, 2018d,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강수」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359~362쪽.

101)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102) 나희라, 1997,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한국사연구』 98, 77쪽 ; 안주홍, 2019.6a, 「신라 해공왕대의 종묘제 개편과 그 함의」 『역사와 경계』 111, 127쪽.

103)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2년 봄 2월.

104) 안주홍, 2020.6b, 앞의 논문, 247~254쪽.

수용했는지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유신을 공신으로 언급한 이유로, 배향공신제도와 연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기약하고,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며 글을 마치겠다.

II장에서는 681년설과 재론설을 비판하였다. 681년설은 [가-2](『삼국유사』)의 기록과 『삼국사기』의 신문왕 책립 기사를 존중하여 신문왕의 책립사가 논쟁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내자료를 중시한 『삼국사기』의 편찬 경향을 볼 때, 즉위조에 책립 사실만 기록된 것은 책립사가 묘호 논쟁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81년에 논쟁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692년에 미해결된 논쟁이 재론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론설은 고종이 논쟁을 종결하였다는 [가-2]의 기록과 상치되며, 묘호 논쟁이 미해결 상태라면 686년에 측천이 신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준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III장에서는 허구설을 비판하여 논쟁이 692년에 벌어진 사실임을 밝혔다. 허구설은 692년에 논쟁을 제기한 사신과 효소왕의 책립사가 파견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나, 효소왕의 책립사가 신라에 온 것은 693년이다. 또 [가-2]가 원전을 인용한 것이고 [가-1]은 이를 변용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삼국유사』에도 축약과 개서가 존재하므로 원전을 인용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가-2]를 후대에 신라 내부에서 변형된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하나는 당 고종이 김유신을 33천인으로 인정한 점이다. 나머지는 공신으로 위징과 이순풍을 꼽은 점이다. 위징이 언급된 것은 그가 당 태종의 배향공신이기 때문인데, 그는 705년에 중종이 복위하여 당 태묘를 복원한 이듬해에 배향되었다. 이순풍은 당 지손이 측천에게 전멸당할 것을 막은 일화로 유명한데, 이 설화의 원전은 9세기의 것이다. 두 사람은 '무주혁명으로 인한 당 황실의 시련'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역으로 논쟁이 무주혁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IV장에서는 692년에 논쟁을 일으킨 주체와 원인을 검토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측천을 외교의 주체로 서술한 기록이 있으므로, 김부식이 필법에 따라 측천을 중종으로 고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 중종(여릉왕)은 방주에 유폐된 상태라 외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쟁의 주체는 측천이며, '중종의 구적'이라는 방식으로 제기한 이유는 이씨 중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690년에 무주혁명으로 측천은 황제가 되었고, 무씨 7묘인 주 태묘를 건립하였다. 그에 따라 당 태묘는 향덕묘로 격하되었는데, 묘수가 3묘에 불과했다. 이에 측천은 당 종실과 관료집단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 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자 논쟁을 제기하였다. 신라 중대 왕실은 왕조의 정당성을 일통삼한에 두었기에 '중종의 구척'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또 측천이 대신라외교에 온건적이어서 거절할 수 있었다. 신라의 거절에 측천은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신라의 이탈과 당 종실의 위상 강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신라는 태종호를 고수함으로써 혜공왕대와 애장왕대의 종묘 개편에서도 일통삼한 의식을 유지, 환기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구당서』, 『당회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당서』, 『자치통감』, 『정관정요』, 『책부원구』

오궁 찬, 임동석 역주, 2009, 『정관정요』 1, 동서문화사.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

2. 단행본 및 저서

권덕영, 1997, 『고대한중외교사-견당사연구-』, 일조각.

김영하, 2012, 『한국 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일연학연구원 편, 2007,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전덕재, 2018,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정구복 외, 1995,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보돈, 2018,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金子修一, 2006, 『中國古代皇帝祭祀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濱田耕策, 2002, 『新羅國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3. 논문

권덕영, 2005.2, 「8, 9세기 ‘군자국’에 온 당나라 사절」 『신라문화』 25.

권은주, 2010, 「7세기 후반 북방민족의 반당활동과 발해건국」 『백산학보』 86.

金子修一, 2001.9, 「중국의 입장에서 본 삼국통일」 『한국고대사연구』 23.

김수태, 1999a, 「나당관계의 변화와 김인문」 『백산학보』 52.

김수태, 2014.12b,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김영하, 2018.3,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89.

김종복, 2016.6a,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진단학보』 126.

김종복, 2019.5b,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역사비평』 127.

- 김창겸, 2004.12,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 나희라, 1997,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한국사연구』 98.
- 노태돈, 1982,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 박남수, 2016.12a, 「신라 문무왕대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8.
- 박남수, 2020.8b, 「신라 종묘제의 정비와 운영」 『신라사학보』 49.
- 신성곤, 2014, 「종묘 제도의 탄생」 『동아시아문화연구』 57.
- 안주홍, 2019.6a, 「신라 해공왕대의 종묘제 개편과 그 함의」 『역사와 경계』 111.
- 안주홍, 2020.6b, 「신라 애장왕대의 종묘개편과 천자 지향」 『영남학』 73.
- 윤경진, 2013.8a, 「신라 태종(무열왕) 시호 논변에 대한 자료적 검토」 『역사와 실학』 51.
- 윤경진, 2013.11b,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한국사학보』 53.
- 윤경진, 2019.3c, 「삼한일통의식은 7세기의 이념인가」 『한국고대사연구』 93.
- 윤진석, 2020, 「648년 당태종의 ‘평양이남 백제토지’발언의 해석과 효력 재검토-‘신라의 백제통합론’과 ‘삼한일통의식 9세기 성립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34.
- 장정해, 2003.12, 「무추천 설화에 나타난 예언과 징조」 『중국어문학지』 14.
- 주보돈, 2015.8a, 「신라의 ‘동경’과 그 의미」 『대구사학』 120.
- 주보돈, 2016b, 「대중 외교와 그 흐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12 신라의 대외관계와 국제교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주보돈, 2017c,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126.
- 주보돈, 2018d,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강수」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 황운룡, 1982, 「신라태종묘호의 분류시말」 『동국사학』 17.
- 李永, 2017.8, 「宗廟与政治：武則天時期太廟体制研究」 『學術學術』 49.
- 周善策, 2010년5기, 「國家禮儀与權力結構：試論唐朝前半期陵廟禮之發展」 『歷史研究』.

ABSTRACT

A Study of Dispute of TaeJong(太宗) Myoho(廟號) and the Causes

An, Ju-hong

This article analyzed when and by whom the dispute of TaeJong(太宗) Myoho(廟號) was caused. According to 'Samguksagi(三國史記)', the dispute took place in 692 (the 12th year of King Sinmun(神文王)'s reign). In 690, Emperor Zetian(則天) established the Zhou(周) Dynasty. The 'Taemyo(太廟)' of the Zhou Dynasty consisted of seven tombs of Mu(武氏七廟). As a result, the status of Taemyo in Tang(唐) Dynasty was lowered to Hyangdeokmyo(享德廟). There are two reasons why Emperor Zetian have caused dispute of TaeJong(太宗) Myoho(廟號). One is to resolve the dissatisfaction of the Tang royal family and bureaucrats. The other i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around the Zhou Dynasty. The formality of dispute was 'verbal command(口勅)' of Emperor Zhongzong(中宗). As it was a matter of Yi(李氏)'s tomb, the dispute was raised under the name of Yi's Jungjong.

The royal family of Silla Dynasty in the middle period(中代) rejected the request of Emperor Zetian for two reasons. One is that they used 'Iltongsamhan (unification of the three hans, 一統三韓)' as a justification for the dynasty. The other is that they judged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take a strong response even if they refused, as the Emperor Zetian is a moderate position on the Silla. Silla adhered to TaeJong(太宗) Myoho(廟號). As a result, the Silla royal family was able to continue to advocate sense of Iltongsamhan and independent view of the world based on it.

The story of Taejong Myoho's controversy continued to be handed down in Silla society. The story was transformed and expanded in the course of

transmission. That's the record of 'Samgukyusa(三國遺事)'. Wei Zheng(魏徵) and Li Chunfeng(李淳風) are recorded as wise servants(賢臣) of Emperor Taejong(太宗) of Tang(唐) Dynasty. Wei Zheng became a 'Baehyanggongsin (Servants performing rituals together at Jongmyo Shrine, 配享功臣)' of Emperor Taejong in 705. When Emperor Taejong tried to kill Wu Zetian(武則天). Li Chunfeng opposed it, saying that if Wu Zetian was reborn, it would kill more members of the imperial family. Emperor Taejong accepted Li Chunfeng's opposition and the Tang imperial family was able to survive. This story is from the 9th century.

Key Words : King Sinmun(神文王), Taejong(太宗), Myoho(廟號), Emperor Zetian(則天), Iltongsamhan(unification of the three hans, 一統三韓), Wei Zheng(魏徵), Li Chunfeng(李淳風), Kim Am(金巖), Hyangdeokmyo(享德廟), seven tombs of Mu(武氏七廟), Wu Zhou Revolution(武周革命)

논문 투고일 : 2021. 7. 14. 심사 완료일 : 2021. 7. 28. 게재 확정일 : 2021. 8. 6.